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19769호, 2023. 10. 24. 공포)되어 도서·산간 등 생활물류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지역을 물류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 국가·지자체가 물류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물류취약지역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물류취약지역 지정기준 마련(안 제1조의2)

물류취약지역 지정 기준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지정 절차 신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30일
까지 우편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

(전화 044-201-4156, 팩스 044-201-5601)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물류취약지역의 지정기준) 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이란 시·군·구 중에서 소비자에 대한 생활물류서비스 제공 여부 및 요금 수준, 배송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물류취약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산업정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시·도에 속한 시·군·구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조제1항 중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법 제5조제1항제2호”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1조의2(물류취약지역의 지정기준) 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시·군·구 중에서 소비자에 대한 생활물류서비스 제공 여부 및 요금 수준, 배송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p>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물류취약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산업정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시·도에 속한 시·군·구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제2조(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기</p>	<p>제2조(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기</p>

준 등) 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 및 영업점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생략)

준 등) ① 법 제5조제1항제2호-

-----.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	
연 락 처	(044) 201 - 4156